

November 20, 2019

Legal Update

주파수면허 제도 도입 등 전파 관련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전파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등

I. 정부의 전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 11. 14.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5G IoT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전파법은 수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규정체계가 복잡하고 전파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전파이용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발표
- 전파법 전부 개정 원칙은 (1) 전파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전파법령 마련, (2)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전파산업 활성화, (3)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 마련 등으로 관리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법 체계와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파수 이용체계 단일화 - 주파수 면허제 도입

- 주파수할당·지정·사용승인으로 구분된 복잡한 이용체계를 주파수 면허제로 통합·단일화
- 현행 법령상 주파수이용은 이용주체에 따라 주파수할당·지정·사용승인으로 나뉘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실제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용자 지위, 무선국 개설 등 적용되는 규제체계가 달라 새로운 전파활용 서비스 도입 시 제도 적용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움

[현행 주파수이용체계]

구분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사용승인	비면허
개념	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 부여	개별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 지정	외교·안보 등의 목적 주파수 이용 허가	별도의 허가 없이 주파수 이용 가능
특징	경매를 통한 대가할당과 심사를 통한 심사할당으로 구분	주파수 이용 권한 부여와 무선국 개설을 한번에 규율	공공 목적 하의 이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규율	적합성 평가를 준수 외 특별한 제한이 없음
양도·임대	대가할당만 가능	불가	불가	불가
이용대가	대가할당만 부과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전파사용료	부과	부과	미부과	미부과

- 전파법 전부개정안은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파수면허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파수를 이용하는 체계를 일원화
- 주파수면허는 이용주체 및 목적에 따라 ①사업 주파수면허, ②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③일반 주파수면허로 구분
 - 사업주파수면허: (i)기간통신업무 제공을 위한 통신주파수면허, (ii) 방송사업을 위한 방송주파수면허, (iii) 그 외 영리 목적의 주파수이용을 위한 기타사업주파수면허로 구분
 - 국가·지자체면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 부여
 - 일반주파수면허: 사업주파수면허, 국가·지자체면허 외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부여
- WiFi 기기 등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 사용은 그대로 유지

∴ (point)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영리목적의 서비스의 경우 주파수할당 대상인지 주파수지정대상인지 여부가 모호하였으나, 주파수면허체제로 단일화 됨에 따라 영리 목적의 사업 영위 시 사업주파수면허를 취득하면 되므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더욱 제고됨

나. 전파이용대가 통합 - 주파수면허료

- 주파수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전파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
 - 주파수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주파수이용에 대해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함으로써 직관적인 전파이용대가 체계를 구축
 -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가치와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파수면허료를 산정할 것으로 예측

※ 세부 주파수면허료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 현행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국가·지자체 개설 무선국, 방송국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면허료 감면 대상 규정
 - 4차 산업혁명 확산을 위해 기존 감면 대상에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확산과 시장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자를 추가

※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확산과 시장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에서 규정

∴ (point) AI, VR·AR, 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서비스 제공 관련 주파수 이용 부담이 덜해질 것으로 예측됨

다. 무선국 관리제도 개편

- 규제완화를 위해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절차를 무선국면허 절차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선국 개설절차를 간소화
 -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절차(사전) → 준공신고(사후)’의 2단계로 규정된 무선국 개설 절차 중 무선국 준공신고만을 유지
 - 주파수면허 심사 시 무선국 개설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여, 무선국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전 신고·허가 절차 없이 무선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무선국 설치공사 후 스스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이른바 자기적합확인제도를 통신주파수면허에 한해 도입
 - 단, 통신주파수면허에 따른 무선국에 대한 정기검사(5년)까지의 규제기관의 관리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국에 대한 표본추출 방식의 수시검사 도입

※ 수시검사 불합격 시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무선국도 검사를 받게 됨

∴ (point) 5G 도입에 따라 무선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표본추출 수시검사가 도입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

라. 기타

- **(주파수 양도·임대 확대)** 주파수 양도·임대 대상을 기존 대가할당 통신주파수에서 통신·일반주파수면허(방송용 제외)로 확대
 - 다양한 이용형태에 따른 주파수 2차 시장 활성화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대
- **(전자파 정보센터 설치)** 전자파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 신설
 - 생활공간 전자파 측정 및 정보 제공, 전자파 전문가 위원회 운영 등 전자파 안전을 둘러싼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구 설치
- **(전파응용설비 규제 완화)** 전파 혼간섭 피해 우려가 적은 지역에서 전파응용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준공신고 후 바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전파응용설비)를 주거·상업 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중 차폐시설을 갖춘 곳에서 이용할 경우 준공검사 전에도 사용 가능

3. 향후 절차

- 전파법 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법안 심사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전파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전파법 전부개정시행령이 입법예고될 예정임
 - 주파수 면허의 신청, 심사사항, 절차, 면허 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시행령 개정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II. 정부의 주파수 공동사용 행정예고

1. 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 11. 8.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
 - 전파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파수 공동사용의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 ※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①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②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③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
- 주파수 공동사용 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에 따라 대역 발굴이 본격화되어 유휴 주파수 대역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주파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저렴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주요 내용

- (공동사용 후보 대역 발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후보대역을 발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수요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가능
 - 후보대역 발굴 후 해당 주파수가 실제 주파수공동사용에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분석 실시
- (대역 선정과 공동사용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고, 공동사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해당 대역에 대한 공동사용 신청이 가능
 -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선정 시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 용도, 기술방식, 지역 및 이용시간,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간 혼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운영

법무법인 세종은 전파이슈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전파이슈에 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다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파수이용, 무선국 개설,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등 전파법 관련 다양한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강신욱
파트너변호사

☎ 02-316-4059

✉ sokang@shinkim.com



장준영
파트너변호사

☎ 02-316-4410

✉ jyojang@shinkim.com



박창준
소속변호사

☎ 02-316-1660

✉ cjpark@shinkim.com



강지현
소속변호사

☎ 02-316-1518

✉ jhykang@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